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 등 >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11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 발의배경 검토	3
2. 개정안 주요내용	6
(1) 전담기관 신설	6
(2)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 등	11
(3) 개정안 부칙	1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정훈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2. 12.
3. 회 부 일 : 2026. 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와 진흥을 위하여 2019년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학교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실내 수영장, 운동장 등 교육시설 개방이 증가하면서 전문적 안전 관리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시설의 노후화 확대 및 폐교 활용 수요 증가 등 관리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환경임. 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설 관리를 통해 학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하고, 학교시설 개방 및 복합화 등 지역의 수요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여 학교시설 개방·운영, 유지관리, 폐교 활용, 시설정보 통합 관리 등 교육시설에 대해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재편하고자 함. 또한, 교육감이 교육시설의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

별 학교에 책임을 맡기지 않고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및 제35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발의배경 검토

□ 최근 5년간(2021~2025)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시설¹⁾ 개방은 운동장의 경우 2021년 78.9%에서 2025년 81.7%, 체육관의 경우 2021년 67.9%에서 2025년 75.4% 등으로 확대되는 추이를 보임.

또한 폐교 수도 2021년 24개교에서 2025년 49개교로 증가하여 5년간 158개교가 폐교되었으나, 매각된 9개교를 제외한 158개교 중 51.7%인 77개교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시설과 폐교 등에 대한 체계적·전문적인 운영·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교육시설 개방 현황]

(단위: 개소, %)

학교급	운동장			체육관			강당			시정각실		
	보유	개방	개방율	보유	개방	개방율	보유	개방	개방율	보유	개방	개방율
2021	11,430	9,021	78.9	7,466	5,067	67.9	4,396	2,469	56.2	4,731	2,272	48.0
2022	11,363	8,992	79.1	7,769	5,240	67.4	4,381	2,347	53.6	4,732	2,182	46.1
2023	11,392	9,518	83.5	8,033	5,990	74.6	4,355	2,582	59.3	4,788	2,159	45.1
2024	11,587	9,555	82.5	8,300	6,235	75.1	4,243	2,476	58.4	4,887	2,050	41.9
2025	11,433	9,346	81.7	8,393	6,329	75.4	4,153	2,421	58.3	4,934	1,929	39.1

주: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기준(고등교육기관 제외)

자료: 교육부

1) 「교육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폐교 및 폐교 활용 현황]

(단위: 개교, %)

년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폐교 수	24	27	20	38	49	158

구분	활용			미활용	합계
	대부(임대)	자체활용	소계		
폐교 수 (비율)	16 (10.7)	56 (37.6)	72 (48.3)	77 (51.7)	149 (100.0)

주: 1. 158개교 중 9개교는 매각되어 현재 보유는 149교임

2. 폐교 활용은 2025.3.1. 기준

자료: 교육부

□ 한편, 교육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에 따른 관리에 대해, 적정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53.1%(전혀 그렇지 않다 28.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5.0%), 적정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답변이 19.8%(매우 그렇다 2.9%, 그렇다 16.9%)로 나타났고,

학교시설 개방·관리와 관련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안전사고 예방 및 책임 기준 정비(25.8%), 전문인력 확보·배치(22.2%), 유지관리 등 관리 체계 변화(18.8%)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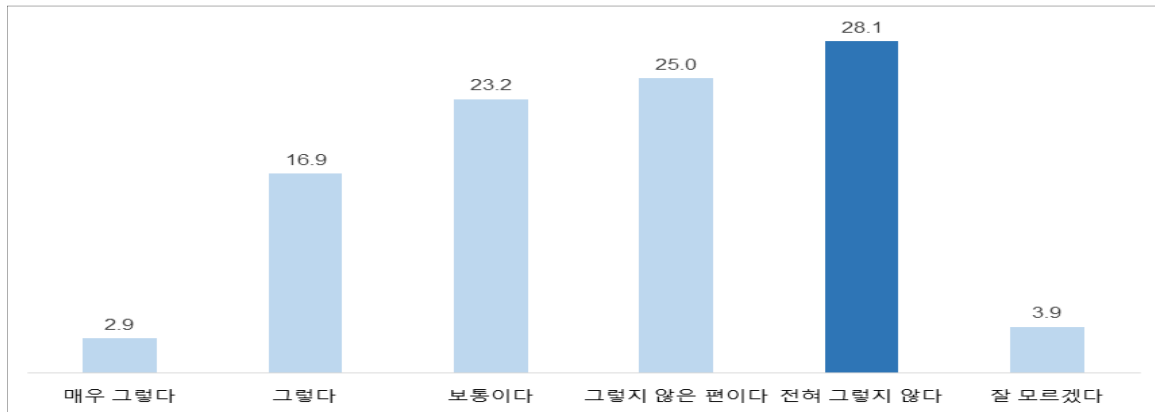
학교 현장에서 학교시설 개방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교육시설 관련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 용
조사대상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조사기간	2025.9.15. ~ 2025.10.2 (3주간)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내용	교육시설 운영 현황, 시설 관리체계 인식, 개선 필요사항, 공단 설립 필요성 등
유효표본	50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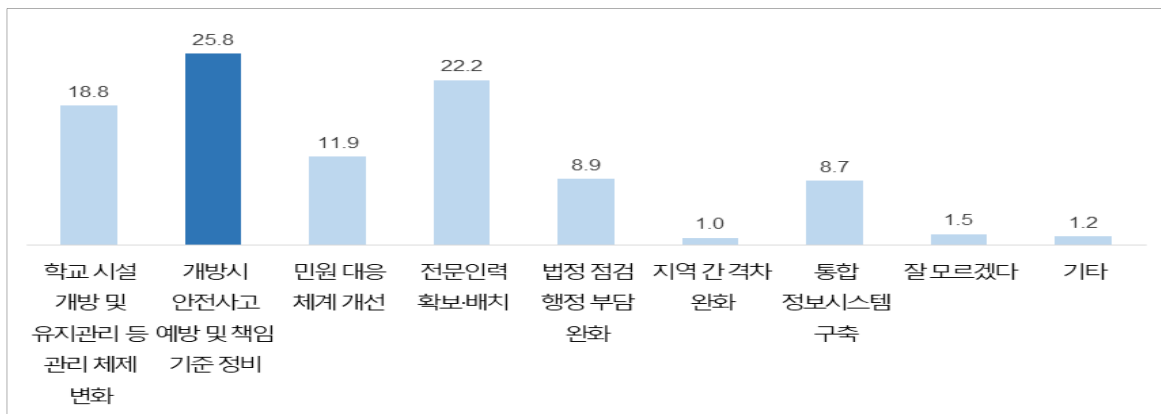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한 업무 부담에 따른 걱정 관리 여부



자료: 교육부

* 학교시설 개방·관리시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과제



자료: 교육부

□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시설의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명칭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며 교육시설관리공단에서 교육시설 개방 등 운영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 안전 관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개정안 주요내용

(1) 전담기관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시설의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학교에 책임을 맡기지 않고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3조의2(전담기관) ① 교육감은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 2. 교육시설의 안전, 유지관리 및 시설 보수 등의 위탁 업무 3. 폐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 4.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u>호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 관리</u> <u>5. 그 밖에 전담기관의 목적달성 을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 는 사업</u> <u>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 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제33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 교육감이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 전담기관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제3항) 전담기관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 **안 제33조의2제1항**은 교육감이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전담기관을 통해 교육시설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33조의2제2항**은 전담기관의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 (제2호) 교육시설의 안전, 유지관리 및 시설 보수 등의 위탁 업무, (제3호) 폐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 (제4호)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업무는 현재 개별학교, 교육청 등이 직접수행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현재 개별학교, 교육청 등이 수행하던 업무를 교육감이 지방공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 지방공단이 교육시설 관련 업무의 관리 책임 주체가 되어 개별학교의 대응 부담과 책임이 완화되고, 전문 기술인력 통합 운영을 통해 인력의 활용도가 제고되는 한편, 소규모 보수공사, 시설점검 용역 등의 통합 발주를 통해 관리비용과 행정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임.

또한 체육관, 운동장, 학교복합시설 등 개방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화된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교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33조의2제2항 전담기관 업무 및 현재 수행 기관]

전담기관의 업무 내용	현재 수행 기관
(제1호)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 학교장의 결정(국립학교)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공·사립 학교)에 따라 국민이 학교시설 등 이용 가능	개별학교 직접수행
(제2호) 교육시설의 안전, 유지관리 및 시설 보수 등의 위탁 업무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시설·설비·교구의 점검 등) : 학교장은 학교의 시설·설비·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 시설·설비·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치 필요 비용 지원 가능	개별학교 직접수행, 필요시 안전원 위탁
(제3호) 폐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 • 「폐교활용법」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활용 촉진 등이 포함된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 수립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함	교육청 직접수행
(제4호)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 「학교복합시설법」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 : 학교복합시설 설치자(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부장관(국립학교), 교육감(공·사립 학교))가 운영·관리 * 운영관리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운영관리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지자체, 교육부(국립)· 교육청(공·사립), 직접수행 또는 위탁
(제5호) 전담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	-

- 개정안에 따른 전담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지방공단의 성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해당 의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²⁾

□ 개정안에 대한 조문체계 정비가 필요한 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제33조의2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전담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전담기관 수행 사업에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상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할 수 있고,³⁾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⁴⁾ 조례가 아

2)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12호) 내용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 12. (생략) <u><신설></u>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 12. (현행과 같음) 13. 「 <u>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u> 」 제33조의2에 따른 <u>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u>

3)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①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닌 교육규칙으로 교육감이 전담기관의 사업을 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아울러 제33조의2제3항에서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던 제33조의2제2항제5호와 같은 사유에서, 조례가 아닌 교육규칙으로 이를 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교육시설의 안전 확보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2)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행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교육시설관리공단에서 학교시설 개방·운영, 유지관리, 폐교 활용, 시설정보 통합 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 안전관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안 제35조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5)

현행	개정안
제6장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제6장 교육시설관리공단
제35조(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	제35조(교육시설관리공단의 설립)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지원, 안전 및 유지관리와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 공단-----.
③ 안전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단----- ----- -----.
제36조(안전원의 사업) ①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36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 -----.

5) [개정안 조문대비표]가 생략된 부분 중, 제37조(안전원의 재정)부터 제48조(공무원의 파견)까지, 제49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제2항, 제50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54조(과태료)는 ‘안전원’을 ‘공단’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제49조제3항은 ‘지정전문기관 또는 안전원’을 ‘지정전문기관, 전담기관 또는 공단’으로 개정하는 내용임.

1. ~ 14. (생략) 15. <u>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u> <u>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u> <u>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16. (생략) ② <u>안전원</u>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u>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지원,</u> <u>안전 및 유지관리</u>----- ----- 16. <u>교육시설의 개방 및 폐교 관리</u> <u>등 활용에 관한 업무</u> 17. <u>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보수</u> <u>등 학교 시설 지원에 관한 업무</u> 18. <u>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시설</u> <u>관리 전담기관 운영에 관한 기</u> <u>술 지원 등의 업무</u> 19. <u>교육시설 정책 기획·연구 및</u> <u>정책 지원</u> 20. (현행 제16호와 같음) ② <u>공단</u>----- ----- -----. (※ 이하 생략)
--	--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제6장에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제35조에서 설립 목적에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지원’을 추가하는 한편, 제36조제1항에서 공단의 사업에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추가함.

-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제6장에서 장 제목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함. 이는 교육시설의 ‘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을 반영하는 한편,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전담기관인 지방공단에 상응하여 교육시설관리공단이 ‘중앙공단’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추가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지정 이전에는 조직의 법직지위, 유형 등에 대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현행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조직체계 및 사업내용]

구분	내용
명칭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법인유형	• 비영리 특수법인
민법상 준용	• 사단법인
의결기구	• 총회(198명), 이사회(11명)
조직체계	• 이사장 1명, 상임감사 1명, 2본부 • 정원 162명
사업범위	• 교육시설공제사업, 교육시설 재난 및 재해 예방,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교육시설안전인증 관련 업무, 통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 관리

자료: 교육부

- 현행법에 따라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피해 복구, 통합정보망 운영 등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던 안전원이 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시설 개방 등 운영 지원 사업을 추가로 수행하게 될 경우, 축적된 업무 실적과 확보된 자료 등을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시설 운영 지원이 이루어지는 한편, 지방공단과 같이 통합적 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비용 절감 등

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개별학교 또는 교육청이 수행하는 교육시설 관련 사업에 대해, ① 현행 수행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 ② 제33조의2에 따라 전담기관인 지방공단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③ 제36조에 근거하여 중앙공단의 역할을 하는 교육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별학교 또는 각 시·도 교육청의 수요에 따라 중앙공단과 지방공단 체계의 규모, 운영방식, 소요 재원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의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다음으로 개정안의 내용 중 구체적인 업무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격, 중복 또는 누락, 수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제35조에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 목적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공제사업에 더하여 ‘개방·운영 지원’을 추가함. 개정안과 같이 공단의 확대된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나, ‘개방·운영 지원’의 운영에 개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방 및 활용 등 운영 지원’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제36조제19호에서 ‘교육시설 정책 기획·연구 및

정책 지원'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시설 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은 공단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교육시설 정책 기획은 해당 정책을 수립하는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이므로,⁶⁾ 교육시설 관련 조사·연구 등을 규정한 현행법 제14호에 '교육시설의 개방 및 운영 등 활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 제36조제16호에 혼재된 교육시설의 개방과 폐교를 분리하고, 같은 조 제17호에 규정된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는 현행법 제2호부터 제13호까지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삭제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그 외에 개정안은 제6장 중 제37조(안전원의 재정)부터 제48조(공무원의 파견)까지, 제7장 보칙 중 제49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및 제50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8장 벌칙 중 제54조(과태료)에서 안전원을 공단으로 변경하여 안전원의 재정, 정관, 총회 등에 대한 사항을 공단에 대한 사항으로 적용하고, 제49조제3항에서 감독기관

6)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고등평생정책실) ① 고등평생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7. 교육시설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고등평생정책실) ① 고등평생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⑥ 고등평생정책실에 대학정책과·대학학사운영과·학술연구정책과·대입정책과·지역대학지원과·산학협력지원과·국립대학지원과·사립대학지원과·대학시설지원과·평생학습정책과·전문대학지원과·청년장학지원과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을 둔다.

⑱ 대학시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시설에 대한 정책의 수립·지원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17. 학교복합시설 정책의 수립·시행

장이 전담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공단에서 기존 업무인 안전 및 유지관리와 공제사업 외에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3)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법률을 시행하도록 규정함.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안전원의 공단 전환 등을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이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 법령 개정, 기관 전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안전원의 공단 전환과 관련하여, 종전 안전원을 공단으로 간주하고, 종전 안전원의 행위를 공단의 행위로 간주하는 등의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89